

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7. 6. 26.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(생략)	(좌동)	
제 1 조(목적) ~ 제 2 조(용어의 정의)  제3조 (자동이체 신청)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오픈플랫폼중계센터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서면(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	제1조(목적) ~ 제2조(용어의 정의)  제3조 (자동이체 신청)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오픈플랫폼중계센터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서면(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, <b>ARS 등 (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금 동의 방법)</b> 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	ARS 등 사전동의 방법 추가
제4조(자동이체) ~ 제15조 (다른 약관과의 관계)  (생략)	제4조(자동이체) ~ 제15조 (다른 약관과의 관계)  (좌동)	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

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이전에 영업점, 인터넷뱅킹 이용매체에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개월간 게시하고,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